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760호 2020. 7. 22.[수]



서	기관의	장
<u> </u>		
결		

고 시

제2020-87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 - 8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 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7. 22.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101-25 등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 H ~ A	C and A	고	시 일	C크립티스티오	ш
번호	종전주소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u>도로명주소</u> 도로명주소 <u>도로명주소</u> 도로명주소 <u></u>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32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101-25	20090702	20200722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77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1320	20090702	20200722	금이 많이 나왔다하여 개금이라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27-2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22	20091228	20200722	거기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340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2141-160	20091228	20200722	마을 남서 뒷산이 말과 같이 생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222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거창88로 250-11	20180502	20200722	솔숲이 울창하여 붙여진 자연마를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130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거차2길 23	20090401	20200722	마을 뒷산너머 개발골 골짜기 물을 끌어 넘겨서 농사를 지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40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3길 56-12	20090401	20200722	마을을 새로 옮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204-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102-10	20090401	20200722	온천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204-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102-12	20090401	20200722	온천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로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17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오계길 250-54	20090401	20200722	조선 선조 때 하빈인 월담 이정기가 그의 호에 "월"을 따고, 빛날 "화"자를 써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87-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용전길 121-14	20090401	20200722	마을은 초생달 같고, 마을앞 황강물에 접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 모집 공고(안)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거 창 군 수

1. 모집인원: 10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계	10명		
산림보호지원단	10명	 이 항노화힐링랜드 내 산림 정화활동 및 환경정비 이 등산로, 도시숲 환경정비 이 관내 임도시설 환경정비 이 대형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시 진화활동, 응급복구, 대민지원 등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 방문 접수(접수기간 내 거창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으로 직접 제출)
- 접수기간 : 2020년 7월 20일 ~ 7월 23일 18:00까지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1) 서식 인쇄사용 가능
 - *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ㅇ 표준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

-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표기)
- 구직등록증(고용센터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요, 시·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o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교육 이수증·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3. 선발방법 및 일정

- 1) 선발방법 [1차 : 서류심사(50점) / 2차 : 면접심사(50점)]
 - * 최종 합격자는 1차·2차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심사 : 산림보호지원단 선발 배점 기준에 의한 선발
 - * 세부사항은 붙임(선발 배점 기준표) 내역 참조
- ㅇ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 적격성 심사로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에 대한 종합 면접 실시

2) 선발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년 7월 27일(월) ※개인별 유선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0년 7월 29일(수) ※개인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년 7월 31일(금) ※개인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2020년 8월 3일까지
- ㅇ 동점자 일 경우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선발
 - ① 취업취약계층 ② 산림·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유자 ③ 산림분야 경력자
- ㅇ 산림보호지원단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 2차 면접심사에서 산림보호지원단으로서 업무수행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2020년 8월 3일(월)
 - * 근무 시작일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일모아시스템 자료요청 회신여부에 따라 최종합격 일정 변동가능
 - * 선발과정 또는 합격 후에도 배제사유 확인 시 탈락할 수 있음.

4. 응시요건

1) 신청자격

근무지역	응시요건
	- 선발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전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사업 추진의 여건 및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 (청각, 간질, 알콜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및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 자
- 과거 산림청 및 타 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

3)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산정기준

-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조퇴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4)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ㅇ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 감정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자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
- 5) 선발우대
 -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 우선선발(붙임4 참조)
 - ㅇ 타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부여를 정한경우
 -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5. 주요임무

- 1) 항노화힐링랜드 내 산림 정화활동 및 환경정비
- 2) 등산로 및 도시숲 환경정비
- 3) 관내 임도 환경정비
- 4)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5)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6. 근로조건 및 임금

- 1) 근로기간: 2020년 8월 ~ 12월(예산범위 내)
- 2)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 ㅇ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ㅇ 기상여건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3)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휴일은 「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 ㅇ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ㅇ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미사용 수당지급)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68.720원(조장수당 50.000원/월)
 - *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ㅇ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7. 유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2)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3)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4) 「산림보호지원단」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5)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8)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 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붙임 1.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 2.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준표 1부.
 - 3. 관련 학과 및 자격 분야 기준 1부.
 -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붙임 1】

(앞면)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일	사	: 20	20.		.)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를	락전.	화	번호	핸드폰	. 번	호 기	재시	선탄	기입
이메일	일주소							수선	· 신동	의	여부	동의	1() []	동의	()
핸드	포번호							수선	기동.	의	여부	동의	1() []	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ᅡ여자	동의	1() 0	l동의	()				
01	세대주	= (겨부	① 해	당	② 해딩	상없음	\ \	세대:	원:	수 (세[[[등	거인자	(IUI)			명
이 력 사	·			_	업경험	② 실업 I 없음		회사원, 제조업, 자영 전 직업 공무원, 학생, 농어원									
항	실 업	기	간 	20		.~20)		 		무직,	۶) I	타 				
	그밖의	{	경력														
전문기	가인 경	우	자	격(), 2	령력 ()	,	기타()	*상서	비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업	1						(2	2)							
구직	등록여부	7	분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		וכ	참여/	사업명	1			2					3				
	i권될사 참여여·		참 여	기간	20 .	~	20	20			.~20		20		~	-20	
공무원	! 가족여	부							*	가	족 중	에 공약	무원	이 있	,는 공	 경우	 기재

- ① 본 신청서는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보호지원단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 10 10 E 11 C O O T X - 11/ 10 1 E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월구성학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	참여자 선정종료시				
신덕성학	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명중표시 				
취업취약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	동의일로부터 10년				
	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중의절도구대 IV인 				
계층항목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고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시] 전) 무슨이국단의 소리 시작년이국단의(시작년)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붙임 2】

세부 심사 기준표

구분	기 준	배점	비고
	취업 우선 대상(20점) - 취약계층 - 해당없음	20 10	※ 취약계층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결혼 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도숙인 - 여성가장
서류심사(50점)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10점) -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3명 미만 - 해당없음(비세대주)	10 8 5	- 주민등록등본 상
	자격증 등 전문자격 (10점) - 산림·컴퓨터관련 자격증 - 해당없음	10 5	-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산불감시 등 산림분야 경력(10점) - 2년이상 - 1년~2년 - 1년 미만 - 경력없음	10 8 7 5	
	품행 및 참여의지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면접심사(50점)	산림보호에 대한 이해도	15	- 0~15점 면접관 자율배점
건 넙 검 ^F(3V검)	산림분야 일반지식	15	- 0~15점 면접관 자율배점
	기타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 서류심사,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합격자 선정

【붙임 3】

관련 학과 및 자격분야

□ 관련 자격분야

구분	자격분야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산림, 조경 산림					
산림분야 자격증	기사	산림, 조경, 식물보호,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선립표약 자식공	산업기사	산림, 조경, 식물보호,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목재가공, 펄프제지,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질재료					
정보처리 및	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사무관리분야	기능사 및 기타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1급					
등 자격증	워드프로세서1.2	2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붙임 4】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②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 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①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①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 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

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배우자 有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기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3차 대상자 모집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청년 희망지원금」3차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7. 17.

거 창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 7. 20.(월) ~ 7. 31(금)까지
- O 지원대상 : 신청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실직 청년
 - 거주지 요건 : 최초 공고일(4.1.)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1980년 4월생부터 2002년 4월생 까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20. 1. 20. 이후 신청일 까지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 포함)한 청년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 ※ ①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4주) 이상 근무, ②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 O 선발인원 : 3명
- O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
- O 지급방법 : 기프트카드(경상남도내 사용)
- O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www.gnjobs.kr)
- O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2. 신청자격

- O 최초 공고일(4.1.) 이전부터 현재 경상남도 내 신청하는 시군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O 만18세 ~ 39세 이하(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
- 대학생·대학원 재학·휴학생 가능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O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4주) 이상 일을 하다가,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 포함)한 청년
 - * 사업주 서명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 내역(거래명세서) 등]로 확인함

< 지 원 제 한 >

- 1) 주민등록상 경남도내 거주가 아닌 사람
- 2)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수급대상자 포함)
-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 등)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사람
- 5)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 6)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등)

3. 제출서류

- * 반드시 최초 공고일(4.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
- ①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포함) 〈붙임 2〉
- ③ 주민등록등본(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발급:정부24(www.gov.kr), 주민센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금지(예시 _ 850314-*******)
- ④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전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4. 최종선정 및 발표

O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예산 범위내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 선정일로부터 2개월 간

5. 기타 유익사항

- 사업주 서명 없는 경우 등 서류 미비자는 심사에서 제외
- O 본 사업은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O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
- O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 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 O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능
 - ※ 단, 2019년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타 지자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나, 선정 시 후순위에 배치
-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O 지원기간 중 주소지 이전, 중복수급 발생 시 〈붙임3〉 작성 제출
- O 문의방법
 - 신청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 바람
 - 도 및 시군별 일자리 경제부서 현황

문 의	처	연	락	처	문	의	처	연	락	처
경남도청 일자리경	제과	055-	211-3	3331	함안군	· 혁신성장	상담당	055-	580-2	2544
창원시 일자리창출	를 과	055-	225-3	3373	창녕군	일자리경	령제 과	055-	530-1	178
진주시 일자리경제	∥과	055-	749-8	3115	고성군	구 군정혁신	<u>!</u> 담당	055-	670-2	2714
통영시 일자리정책	박과	055-	650-0	0933	남해-	군 지역활	성과	055-	860-3	3233
사천시 지역경제	과	055-	831-3	3082	하동	군 경제전	략과	055-	880-2	2194
김해시 일자리정책	백과	055-	330-2	2738	산청-	군 경제전	략과	055-	970-6	813
밀양시 일자리경제	∥과	055-	359-5	5057	함양군	일자리경	령제 과	055-	960-4	1495
거제시 일자리정칙	^박 과	055-	639-4	4104	거창	군 경제교·	통과	055-	940-3	3373
양산시 일자리경제	Ⅱ과	055-	392-3	3723	합천-	군 경제교·	통과	055-	930-3	3392
의령군 일자리경제	Ⅱ과	055-	570-3	3103						

[붙임 1]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신청서

	이름		주민번호	-	
신청자 정보	이메일		휴대폰 번호		
	본인주소				
	사업장명		근로기간		일 ~ 일
	연락처		주당 근로시간		
직전 근무한	사업주 성명		주업무·과업		
사업장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월평균 급여		
	사업장 주소				
	4대보험 가입여부 (해당시 √)	□ 건강보험 □ 국	민연금 🗆 고용.	보험 □ 산재보험	험
사업주 (회사 대표) 서명 확인 _{필수}	코로나19 감약 때문에 알바	<i>(주 성명</i>)은/는 (<i>신청)</i> 염병 확산 문제와 그로 (자리를 잃어 퇴사하였 사업주 또는 사업장에는	인한 사업장의 여러 음을 확인합니다.	너 어려움 (서명 ※™세	-
신청사유 서술 필수 *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발생 현황 서술 * 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서술	(글자 수 최	'소 50자 이상)		·	

서술한 위 내용은 거짓이 아니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인) ※ 자필 서명필수

경상남도 귀중

[붙임 2]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코로나19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신청자의 본인확인과 자격요건 확인, 관련 일정 알림, 정보 전달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수집·활용 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근로기간, 사업장 정보
- (사업주)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3.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종료일 까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인,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참여여부 조회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

4. 제3자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고용보험 가입여부, 중복사업 참여여부, 성명,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

3.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 종료일 까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주 (인), 신청자 (인) ※ 자필 서명필수

경상남도 귀중

[붙임 3]

자격상실 신고서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아님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자격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O 성 명:
- O 생년월일:
- O 주 소:
- O 연 락 처 :
- O 자격상실 사유

사 유	해당사유에 "○" 표시	변동	동일(연.월.일)
경상남도 외 거주		전출일	
청년수당 참여		참여시작일	
실업급여 수급		수급개시일	
생계급여 수급		수급개시일	
기타 (자진포기 등)	(예시) 자진포기 사유	신고일	

※ 자격 상실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2020년 월 일

신고자 ООО (서명)

경상남도 귀중

거창군 공고 제2020-976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규칙안」입법예고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폐지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규칙안」

2. 제정 및 폐지이유

- 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 조례 제정
- 나.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으로 규칙 폐지

3. 주요내용

- 가. (신설)통합관리기금과 (현행)재정안정화적립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 나. (통합계정) 회계-기금,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 다. (재정안정화계정) 회계-기금,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출입
- 라.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의무
- 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규칙 폐지

- 4. 제정조례안 및 폐지규칙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2. ~ 2020. 8. 11.(20일간)

6. 의견제출

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및「거창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u>2020년 8월 11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055-940-3054
- 팩 스: 055-940-3029
-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94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번호 2020-

제출일자	2020. 7.	
제 출 자	기획예산담	당관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신설)통합관리기금과 (현행)재정안정화적립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 나. (통합계정) 회계-기금,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 다. (재정안정화계정) 회계-기금,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출입
- 라. 개별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의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규제개혁담당, 여성보육담당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7. 22. ~ 2020. 8. 11.(20일간)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4. 기타 수익금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 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 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3.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4.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4. 채무부담 사업비
 -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 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준수,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① 기금운용관과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이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의무기금 또는 군수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예탁 및 통지)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 제1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전 상환에 따른 통합기금의 중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 ②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 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에는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6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담당 담당관 또는 과장
 -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담당주사
 -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하다.

제3조(자금이체)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조성된 재원은 거창군 통합재 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요구서(제13조제1항 관련)

부서명	기금명	예탁가능일	예탁가능금액	비고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기금·특별회계운용관 (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예탁금증서(제13조제2항 관련)

금액 : ₩ (일금 원정)

상기 금액을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자 : ○○○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인)

예탁자 : ○○○ 기금운용관

수탁자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신청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자금 상환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기금을 융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①
거창군 통	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거창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제 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시행일 : 2020. 9. 10.]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현 행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공무원) 거창군수는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적립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적립금업무 담당주사

부 칙(규칙 제1266호 제정 2019.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0-980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3-13호선 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가조 마상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 (교통시설:대로3-13호선 외 6개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20.

거 창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0-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대로3-13호선 외 6개노선)
 - 명 칭 : 가조 마상오거리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북단교차로 : A=2,339㎡(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 남단교차로 : A=2,628㎡(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거창군수(건설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건설과(☎055-940-3552)
-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북단교차로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조 새 시	시킨 -	기숙	(m²)	면색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7,825	2,339					
1	가조면 마상리	80-9	답	24	24	가조면 지산로 1474	변현태			
2	가조면 마상리	699-9	구	6,809	205		국(농림수산부)			
3	가조면 마상리	708-2	도	995	402	가조면 수월리	김임권			
4	가조면 마상리	708-10	도	66	29		이영택			
5	가조면 마상리	80-7	답	87	87		경상남도			
6	가조면 마상리	400	구	3,395	96		국(농림수산부)			
7	가조면 마상리	81-1	답	37	37		경상남도			
8	가조면 마상리	80-4	답	6	6		경상남도			
9	가조면 마상리	399-5	답	112	11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47-8	전원순			
10	가조면 마상리	399-4	답	177	177	가조면 마상리230-1	신정재			
11	가조면 마상리	243-7	도	3	3		국(내무부)			
12	가조면 마상리	243-2	도	129	129	-	하경팔			
13	가조면 마상리	399-3	도	37	37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243-4	도	93	93	-	하경팔			
15	가조면 마상리	398-3	답	3	3	가조며 마상리 308	유옥조			
16	가조면 마상리	398-1	도	74	24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245-4	도	182	29	-	김문주			
18	가조면 마상리	245-6	도	250	59	가조면 마상리 279	김해김씨종중			
19	가조면 마상리	243-5	도	17	17	-	하경팔			
20	가조면 마상리	245-7	도	13	2	가조면 마상리 279	김해김씨종중			
21	가조면 마상리	245-2	도	397	68	-	김문주			
22	가조면 마상리	91-2	답	94	31		경상남도			
23	가조면 마상리	91-3	답	51	18		경상남도			
24	가조면 마상리	91-11	답	308	4		경상남도			
25	가조면 마상리	82-2	답	30	30	서울 은평구 역촌동 83-65	김영곤			
26	가조면 마상리	81-2	답	20	20	가조면 마상리 268	전판진			
27	가조면 마상리	87-3	도	2,236	107		국(농림수산부)			
28	가조면 마상리	91-9	답	64	64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	문재운			
29	가조면 마상리	91-9	답	294	96		경상남도			
30	가조면 마상리	91-8	답	78	78		경상남도			
31	가조면 마상리	91-7	답	249	249		경상남도			
32	가조면 마상리	550-2	도	1,495	3		국(농림수산부)			

2) 북단교차로

일련	2 -1] -7]	-ગોપો	기묘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1,557	2,628					
1	가조면 마상리	147-1	도	1,972	315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155-5	전	238	186		경상남도			
3	가조면 마상리	152-1	공	10	10		거창군			
4	가조면 마상리	150-3	전	28	1		거창군			
5	가조면 마상리	861-34	도	702	114		국(국토교통부)			
6	가조면 마상리	170-2	도	56	8	가조면 마상리 311	장홍득			
7	가조면 마상리	151-3	도	18	18	가조면 마상리 326	전영주			
8	가조면 마상리	151-1	도	66	54	-	이우환			
9	가조면 마상리	189-6	도	763	40		거창군			
10	가조면 마상리	155-1	도	43	43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11	가조면 마상리	155-6	도	156	156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12	가조면 마상리	155-8	도	122	122		거창군			
13	가조면 마상리	170-11	답	39	32		거창군			
14	가조면 마상리	155-2	답	11	11	가조면 마상리 262	최정태			
15	가조면 마상리	170-6	답	6	6		거창군			
16	가조면 마상리	167-10	답	473	296		거창군			
17	가조면 마상리	167-1	답	7	4		거창군			
18	가조면 마상리	168-1	답	443	180		거창군			
19	가조면 마상리	168-2	답	17	17		거창군			
20	가조면 마상리	860-1	천	5,272	95		국(국토교통부)			
21	가조면 마상리	155-18	답	293	230		경상남도			
22	가조면 마상리	155-20	답	58	58		거창군			
23	가조면 마상리	155-11	도	227	211		거창군			
24	가조면 마상리	161-1	천	64	1	가조면 지산로 1466	이현란			
25	가조면 마상리	162-9	천	51	33		경상남도			
26	가조면 마상리	167-3	도	109	109	-	정규수			
27	가조면 마상리	166-2	도	96	96	-	정규수			
28	가조면 마상리	166-3	도	16	16	-	정규수			
29	가조면 마상리	166-6	도	11	11	-	정규수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조재시	<u> </u>	시독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30	가조면 마상리	166-7	도	9	9	-	정규수			
31	가조면 마상리	167-11	답	32	12		거창군			
32	가조면 마상리	167-4	도	7	7	17	박외수			
33	가조면 마상리	167-12	천	5	5		거창군			
34	가조면 마상리	167-5	도	23	23	-	이지구			
35	가조면 마상리	167-9	천	56	44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6	가조면 마상리	165-2	대	3	3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7	가조면 마상리	166-9	천	11	8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38	가조면 마상리	166-10	구	8	8		농어촌공사			
39	가조면 마상리	166-11	천	16	16	가조면 마상리 190-4	마청범			
40	가조면 마상리	169-3	대	20	20		거창군			

거창군 공고 제2020-982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2007.03.29.)로 최초 결정, 거창군 고시 제2008-15호 (2008.03.13.)로 최초 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20. 07. 22.

거 창 군 수

□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비고
一丁七	번 호	기설명	세분	71 7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111/2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02,767	증)11,249	1,814,016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체육시설	■면적변경 - 1,802,767㎡→1,814,016㎡ [증) 11,249㎡]	 사업대상지 내(산 13번지) 주민들의 임의 사용하는 지역 제척 및 지적측량 오차 반영 			

□ 거창군계획시설(세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O 종류: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O 명칭: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3. 사업의 면적 (변경)

○ 당 초 : 1,802,767 m²

○ 변 경: 1,814,016 m² (증 11,249 m²)

○ 토지이용계획

マ マ		구	H) T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1,802,767	중)	11,249	1,814,016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337,718	감)	3,651	334,067	18.7	18.4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건축시설 용지	9,165			9,165	0.5	0.5	
(' ' ' - '	공공시설 용지	89,749	증)	4,180	93,929	5.0	5.2	
	녹지 용지	1,366,135	증)	10,720	1,378,855	75.8	75.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당 초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최익종

- 변 경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백인균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08년 3월 13일 ~ 2020년 09월 30일

○ 변 경: 2008년 3월 13일 ~ 2020년 12월 31일

6.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n	면적 n')	편입 (r	면적 n')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 ,	.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
합계		15필지		1,819,732	1,814,016	1,802,767	1,814,016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231	231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423	423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833	833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1,236	1,236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11,055	1,805,339	1,794,090	1,805,339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3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2,182	2,182	서울특별시 508, 10층(대	강남구 치동,	· 테헤란로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거창군 공고 제2020 - 987호

2020년 거창군민상 후보자 추천 공고

『거창군민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군민화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군민상을 시상 하고자 하니 후보자를 추 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1일

거 창 군 수

- 1. 시상일자 : 별도 일정 통보
- 2. 추천서 접수
 - 기 간: 2020. 7. 22. ~ 8. 21. 장 소: 거창군청 행정과(방문접수)
- 3. 시상대상
 -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4. 시상인원
 - O 대상 1인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음
- 5. 후보자의 자격
 - O 대상 후보자는 등록기준지를 거창군에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사람 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 특별상 후보자는 대상후보자의 상기 자격 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단, 사망자는 추서)
- 6. 공적기간
 -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7. 후보자 추천
 - O 추천방법
 -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소속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군 단위 이상의 단체의 대표 추천
 -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자는 관할 읍.면장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
 - O 추천서류

가. 추천서 1부

나. 공적조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마. 동의서 1부

바.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 8. 수상자 결정 및 통보
 - 수상자 결정은 군민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수상자로 결정된 자는 추천 기관·단체와 당사자에게 통지
-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 055-940-3174)로 문의

[서식1]

2020년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주 소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요공적 사 항 및 영 향		
추천사유		
위의 추천합니!	· 공적이 있으므로 위 사람을 거침 다.	항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거창군수 귀] 하	

[서식2] 연서 추천서식

2020년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서명부

○ 추천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위의 사람을 2020년 거창군민상 후보로 추천함에 동의합니다.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②생년월일		③군 번 (군인의 경우)	
		(외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공적분야		⑪공적기간	
⑩공적요지			
	조 사	· 자	
⑬소 속			
⑭직 위(직급·계급)		⑤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	리없음을 확인합L	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B)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⑰과거 포상기록(훈	⑪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⑱공 적 내 용										

[서식4]

이 력 서

성	한 글	(인) 생년월일	
명	한 자	연 락 처	_ 사 진
등	록기준지		(3*4)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년	월 일	특기사항 및 상벌	비고

[서식5]

거창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속 및					
직위(급)					

※ 동의내용

- 1. 거창군에서 본인에 대한 공적확인 및 포상업무지침에 따른 포상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거창군민상」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창군에서 수상자 및 미담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도자료, 각종 간행물 및 인터넷 등에 사진 및 본인에 대한 소개자료,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20-991호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안 입법예고(안)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22일

거 창 군 수

- 1. 조 례 명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2. 폐지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 O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 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O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폐지함.
- 4. 입법예고기간 : 2020. 07. 22. ~ 2017. 08. 10.(20일간)

5.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폐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도시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2) 전화 055-940-3062, 팩스 055-940-3579, 이메일 promethaus@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폐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ਰ	ᆌ 명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안)
○ 성대	명(단	체명) :				
○ 주		소:				
○ 정	화병	Ħ ㅎ·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런 법 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020. 7. 1. 전부개정(의원발의)

제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라 한다)을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정비공사(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노후 상·하수도 설비 정비공사
 -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5.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전용부분을 제외한다)
 - 6. 노후 소화 · 피뢰설비 교체 공사
 - 7.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 · 통신설비 정비공사
 - 8.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 택)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물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신청금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사업예정기간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하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통장을 사용한다.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2008.12.31 조례 제1911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다.

□ 공동주택관리법(2015.8.11.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상남도 거창군(도시건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입주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주택의 소유자

-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제6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제 외한다.
 - 1. 차도 · 보도, 주차장, 그 밖의 부지의 유지보수
 - 2. 보안등의 유지보수
 - 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 4. 상·하수도의 준설 및 유지보수
 - 5. 석축 · 옹벽 ·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6. 노인정 · 경로당의 유지보수
 - 7. 조경시설의 관리(수목식재 제외)
 - 8. 개방을 위한 담장 등 철거 사업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명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 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금의 교부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③ 군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간은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준공내역서 1부
 - 2. 지출증명서류 1부
 - 3.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
 -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 ③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거창군 재무회계규칙」 및 「거 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 6. 10.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